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임미애 의원 외 18명)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
----------	-----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임미애 · 박영서 · 안희영
고우현 · 김영선 · 남영숙
박미경 · 임무석 · 김시환
김하수 · 홍정근 · 나기보
김희수 · 박차양 · 이선희
이종열 · 정세현 · 이재도
김득환 의원(19명)

1. 개정이유

- 고위험 임신부 및 청소년 임신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규정하여 건강한 출산과 더불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함.
- 아울러, 고위험과 청소년 임신부의 모자건강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함.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는 고위험 임신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나. 도지사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3 신설).

3. 개정조례안 : 불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불임

5. 관련법령 : 불임

6.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불임
- 규제심사 : 불임
- 부패영향평가 : 불임
- 해당부서 검토의견 : 불임
- 비용추계서 : 불임

7. 참고사항

- 발의 및 찬성의원 서명 명부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고위험 임산부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
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절대안정이 필요한 임산부

4. 저체중이거나 비만인 임산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고위험 임산부에게 다음 각 호의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기진통
2. 분만 관련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4. 양막의 조기파열
5. 태반조기박리
6. 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산부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위험 임신부는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청소년 임신부의 지원) ① 도지사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신부에게 의료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임신부는 임신확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고위험 임신부의 지원)</u>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험 임신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절대안정이 필요한 임신부 4. 저체중이거나 비만인 임신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고위험 임신부에게 다음 각 호의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기진통 2. 분만 관련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4. 양막의 조기파열 5. 태반조기박리 6. 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위험 임신부는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u>제7조의3(청소년 임신부의 지원)</u> ① 도지사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신부에게 의료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임신부는 임신확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 련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妊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 12. 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妊)”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1. 7.]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2015. 7. 24.>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 28.>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7.]

제10조의2(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신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신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본조신설 2009. 1. 7.]

[제목개정 2016. 12. 2.]

관련부서 협의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보건정책과	개정문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 필요
	제7조의2	<띄어쓰기 및 문장 수정 필요> 문장 내어쓰기 제7조의제1항 ①도지사는 => ① 도지사는 3호 문장 들여쓰기 정렬 제7조의제2항 제1항의 고위험 임신부가 => 제1항의 고위험 임신부에게
	제7조의3	<띄어쓰기> 제7조의3제1항 ①도지사는 => ① 도지사는 만 18세이하 => 만 18세 이하 제7조의3제2항 ②제1항에 => ② 제1항에
	기타	<조례안 주요내용 띄어쓰기 및 문장 수정 필요> (안 제7조의2) => (안 제7조의2 신설) 만 18세이하 => 만 18세 이하 (안 제7조의3) => (안 제7조의3 신설) <신·구 조문 대비표> 가운데 정렬된 <신설> => √√<신 설> 좌측정렬 개정안 조문 아래 항목 정렬조정 필요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 덕 환
입 안 주 무 부 서	정책기획관	통 보 (조 치) 일	2018. 10. 22.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		

평 가 항 목 별 점 토 자 료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① 구체적 · 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 · 주관적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의 견 없 음”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7조의2 제2항

-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정소요가 예상됨.

○ 안 제7조의3 제1항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신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함.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 기준으로 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204,000	204,000	210,100	210,100	210,100	1,038,300
	○ 청소년임산부 의료비 지원	29,400	29,400	30,000	30,000	30,000	148,800
	소계(a)	233,400	233,400	240,100	240,100	240,100	1,187,100
세출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265,200	265,200	273,130	273,130	273,130	1,349,790
	○ 청소년임산부 의료비 지원	38,220	38,220	39,000	39,000	39,000	193,440
	소계(b)	303,420	303,420	312,130	312,130	312,130	1,543,230
□ 총 비용(a-b)		-70,020	-70,020	-72,030	-72,030	-72,030	-356,13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233,400	233,400	240,100	240,100	240,100	1,187,100
도비	일반회계	70,020	70,020	72,030	72,030	72,030	356,130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시·군비		163,380	163,380	168,070	168,070	168,070	830,970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466,800	466,800	480,200	480,200	480,200	2,374,200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위험 임신부 및 만18세이하 청소년 임신부 의료비 지원 예산 기준으로 산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 상

○ 안 제7조의2 제7조의3

나. 비용추계 방법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 비용 작성

다. 비용추계시 상세내역(2019년)

○ 사 업 량 : 457명

○ 상세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세부내용	산출내역	금 액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1,000× 408명	408,000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1,200× 49명	58,800
합 계		457명	466,800

Ⅲ. 안 제7조의2 제1항 및 안 제7조의3 제1항 관련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7조의2 제1항

- 고위험 임신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정소요가 예상됨.

○ 안 제7조의3 제1항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신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위험 임신부 및 만18세이하 청소년 임신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을 조례에 규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상기 규정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됨.

4.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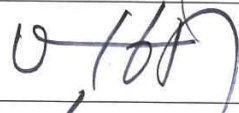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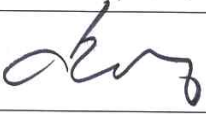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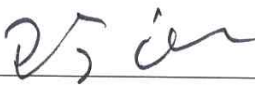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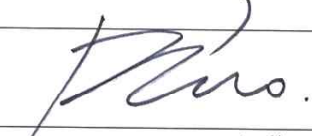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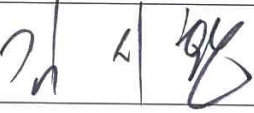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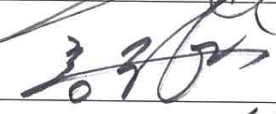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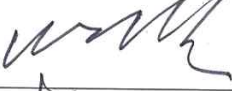
-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지방보건주사보 이주현(054-880-3786)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구 분	내 용	비 고
조 례 명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비용수반)	○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제7조의2, 1항) ○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7조의2, 2항) ○ 청소년 임신부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7조의3)	
담당부서 비용추계	○ 총 2,374백만원(국 1,187, 도 356, 시군 831)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함 -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험 임신부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신부 의료비 지원 예산 기준 으로 산출(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고위험 임신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선언적·권고적인 형식 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험 임신부, 청소년 임신부에 대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374백만원으로 도비 부담 356백만원(부서 비용추계액)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최근 국내경기 회복 지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국비 매칭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 확대 시에는 유사·중복 사업의 구조조정, 비슷한 기구간 통폐합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임.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	서명 및 날인	비고
오 AI 여		
곽 명서		
안 희영		
고 우현		
김 영선		
남 영숙		
허 미애		
임 무성		
김 시현		
김 현영		
홍 정근		
나 기보		
최 희수		
백 희영		
이 전희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llegible]